

헌 법

문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그램규정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조항은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하는 방침규정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 ②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행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의무는 헌법에 근거하는 법적 의무이다.
- ③ ‘구체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직접 소구(訴求)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 ④ ‘입법위임규정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할 의무의 근거도 되지 못하나, 모든 국가권력이 그에 위반할 수 없는 국가목표이다.
- 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조항은 재판규범으로서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문 2.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인 근로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단체는 근로자의 계속적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단과 같이 일시적인 단체도 가리킨다.
- ③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파업에 이르기 전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한 것은 헌법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한 무노동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단체행동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문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 ②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경찰서장이 구속적부심사 중에 있는 피구속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 또는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⑤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은 물론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문 4. 인권 내지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주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② ‘제3세대 인권’이란 평화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연대권을 말한다.
-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소원을 통한 구체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뿐만 아니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을 인권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⑤ 헌법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문 5.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과 함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추구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 ④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물론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⑤ 승용차의 운행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6. 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후보자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보통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귀속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가치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 ③ 선거구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1인 1표와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 간의 인구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행정구역,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과 같은 정책적·기술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비례대표선거제의 도입으로 선거권자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어야 할 선거결과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확보도 포함하게 됨으로써 직접선거의 원칙이 내용상 변화를 겪게 되었다.
- ⑤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하 33%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7.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 ②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이다.
-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甲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乙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한 벌칙이 상이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문 8.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 그것이 자위전쟁이라면, 그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이라크전쟁이 침략적 전쟁인지 여부는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 및 체류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와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 ⑤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9. 국적과 재외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② 국적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한다.
- ③ 정부수립 이후의 이주동포에게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면서 정부수립 이전의 이주동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북한이탈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에는 재외국민이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 10. 국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섭단체는 국회 내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원내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속의원을 통하여 최대한 국회에 반영하고 소속의원으로서 하여금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통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 ④ 각 소속의원 20인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설했다.

문 11.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법률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 ② 학설상으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도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 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본다.
-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규정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 ④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나,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함으로써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 12.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의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활이익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 ② 공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측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자측에 도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 ④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동 조항을 근거로 환경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헌법상 환경권 조항을 근거로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 1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증인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것을 간접강제하기 위하여 그 서면을 신속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증인신문사항이 검사에게 미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 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③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보석 및 구속적부심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표현된 제도이다.
- ⑤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4.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 실현하려는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②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므로 이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 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5. 甲방송사는 에이즈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영화배우 乙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료화면으로 방송하였다. 시청자들은 그 주인공이 乙임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었다. 乙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방송사의 보도행위는 우월한 법익인 乙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 ② 乙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경우 법원은 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甲에게 사죄광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보도대상에 불과한 乙의 명예는 甲방송사의 보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乙의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에 대한 심사기준은 乙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방송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⑤ 乙이 공적 인물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乙은 甲방송사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6. 헌법상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종전부터 영업을 하던 여관시설 영업자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된다.
-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극장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조항은 순수예술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적 관람물의 공연 등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미성년자의 기본권행사능력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위헌 여부가 심사될 수 있다.
- 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문 17.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위행진은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 ②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놓여 있다.
- ③ 공법상의 강제결사의 경우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그 선전·선동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된다.
- 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국제평화주의 및 외교관의 특권에 비추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문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제도보장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 ②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대상이다.
- ④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⑤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문 19.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의로 보임한 행위는 국회 내부 자율의 문제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토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을 처리하였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⑤ 국회의 집회·휴회·폐회·회기 등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의 자율권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소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문 20.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국회의 입법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정부의 전권위원이 대통령의 비준을 유보하여 서명하고 추후 대통령의 비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약은 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이른바 한미행정협정(SOFA)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⑤ 대통령의 비준행위는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발생에 필요할 뿐,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문 21.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약이나 법률로써 확정된 금액과 채무부담행위로서 전년도에 이미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삭감할 수 없다.
- ② 조세평등주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조세가 부과될 것을 요구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계층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⑤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 22.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③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 ⑤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문 23.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약사인 甲, 乙, 丙은 A주식회사(이하 'A'라 함)를 설립하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제약회사와 약국도매상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 공급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해당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 경고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공급을 중단하자 A는 행정법원에 경고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동 신청을 기각하자,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A의 주장을 인용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였다면, A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A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상, 甲, 乙, 丙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A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A는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근거로서 평등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위헌적인 이 사건 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더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문 24.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 ②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③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보다 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 ④ 공연장의 경영자가 국산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영화법 관련조항은 국산영화의 존립과 진흥의 발판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한다.

문 25. 헌법소원사건에서 각하결정의 이유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 ②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고, 당해 기본권 침해행위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 ③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라는 불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충분히 예측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 ⑤ 청구인이 적시한 특정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권력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문 26. 대통령탄핵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헌나1)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 ①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자체로서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은 국회의 별도 의결이 없어도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직인수예관법률에 따라 법적 신분이 대통령당선자로 인정된 자는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당선후 취임사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당선자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 ④ 헌법상 대통령취임선서조항에 규정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비록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

문 27. 국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 ⑤ 동일 안전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문 28. 甲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대지상에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의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받았다. 甲은 위 과밀부담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 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중략)...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제1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ㄱ. 甲은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동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甲이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 제3호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당해사건에서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였다면,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甲이 법 제2조 제3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법 제2조 제3호 중 ‘업무용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

ㄹ. 甲이 법 제2조 제3호에 대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어떠한 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한 바 없이 그 종류 및 규모 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이 주장은 이 대통령령이 집행명령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ㅁ. 甲이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획일적으로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을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甲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면, 그 주장은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필요최소한으로 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9.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 ②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있을 경우, 직접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이라면 그 법규범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수형자의 연령 등 사정을 참작하여 가석방을 하도록 규정한 형법조항은 가석방 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므로 직접 이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을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문 30. 대통령의 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긴급명령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비상상황이 제거되더라도 국회가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④ 긴급명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와 관련된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발할 수 있으나 헌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나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
- 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하여 긴급재정경제처분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은 후자를 발함에 있어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중하여야 한다.

문 31.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방송사는 특집 TV방송을 통하여 모 종교집단의 교주인 乙의 이단성, 성추문 및 도박문제 등을 방영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는데, 乙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나 신용 또는 초상권이나 성명권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304조를 근거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甲방송사는 항소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甲방송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위 사례에서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관하여 甲방송사가 한 주장과 같이,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 ② 만일 甲방송사의 위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될 수 있다면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 ③ 헌법재판소가 방영금지가처분의 허용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을 심사함에 있어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사후적 구제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사전억제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심사한 것이다.
- ④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 ⑤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절대적 금지에 해당하므로,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방영금지가처분 또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문 32.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내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②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정당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할 수 있다.
- ④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해산결정을 할 때까지는 존속한다.

문 33.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생 :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 유통과 관리가 규제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통신망에서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 :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금지되는 음란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선정적인 표현물은 청소년의 접근으로부터는 차단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 ② 학생 : 그렇다면 오늘날 인터넷상의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교수 : 인터넷은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질서 위주의 사고로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 ③ 학생 :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이 게시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까?
교수 : 홈페이지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그 삭제의무는 제3자의 명예훼손의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그 운영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발생합니다.
- ④ 학생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수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정보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며, 그 정보제공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도 청소년으로부터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⑤ 학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만 해놓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교수 :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터넷상 음란물 사이트를 링크하여 웹사이트 주소를 전시하는 행위는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 34.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포·시행되기 전의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더라도, 그 후 그 법률이 유효하게 공포·시행되었다면 청구 당시의 공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
-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
- ③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라도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④ 서울특별시장이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그들의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행사를 확정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⑤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5. 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의기관의 국가의사결정이 그때 그때 여론에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은 그로 인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기관구성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사결정권은 대의기관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민도 국가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③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대표설에 의하면 대의기관의 권한은 국민의 위임행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 ④ 당적이탈·변경시 비례대표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과,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한 국회법 규정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 ⑤ 유권자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설정한 정당별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국회구성권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36.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 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입법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 ③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④ 관련법령에서 노동부장관에게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 의무는 직접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아니다.
- ⑤ 행정부가 위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행정입법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문 37. 헌법상 기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국고보조를 받는 등의 헌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신분보장을 별정직 공무원에게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지역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범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⑤ 특별시를 정부의 직할 하에 두는 법률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문 38.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명확성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②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입법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 없이도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범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 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 심사에 있어서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문 3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대상법률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사건에서 재판의 계속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②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론에 대한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 ④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 개념에서 말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이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문 40.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경합이 1인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 ② 이익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기본권이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각 기본권은 동등하며 또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특정인을 모델로 하여 창작·발표된 소설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소설가의 예술의 자유와 그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은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기본권 주체에게 동일 사안에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경합될 때에는 공무담임권 외에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